

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77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3. .
제출자 교육청소년과장

1. 제안이유

- 대표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명확히 적시하여 경영책임자의 경영 의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재단 운영 자율성을 제고하고,
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 1. 27.)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경영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임원의 직무 조항 신설(안 제7조제3항 신설)
 - 대표이사 책임 명시
- 직원 임면 권한 조항 개정(안 제9조 개정)
 - ‘이사장이 임명’ → ‘대표이사가 임면’ 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 - 2) 부서협의결과
 - 가) 규제사전심사 결과 : 해당 없음
 - 나) 성별영향분석 평가 : 해당 없음
 - 다) 부패영향 평가 : 해당 없음
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- 가) 중앙부처 : 여성가족부
 - 나) 경 기 도 : 청소년과

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,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 중 “이사장이 임명한다” 를 “대표이사가 임명한다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교육청소년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
	팀장 직위·성명	청소년팀장 남혜진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황수정(☎2595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원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9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<u>이사장이 임명한다.</u></p>	<p>제7조(임원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,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대표이사</u> <u>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</u> <u>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</u> <u>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</u> <u>행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제9조(직원) ----- ----- <u>대표이사가 임면한다.</u></p>